완도군의회 공고 제2025 - 34호

완도군 섬 발전 기본 조례안

「완도군 섬 발전 기본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지방자치법」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5년 11월 6일

완 도 군 의 회 의 장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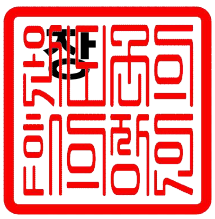

1. 조 례 명 : 완도군 섬 발전 기본 조례
2. 발 의 자 : 조 인 호 의원
3. 제정이유

○ 완도군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섬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주도형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기본원칙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, 제4조)

○ 완도군 섬발전종합계획 및 실태조사(안 제5조, 제6조)

○ 완도군 섬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 (안 제7조, 제8조)

○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(안 제9조, 제10조)

○ 섬 관련 행사 추진 등 및 여객선 운임지원(안 제13조, 제14조)

5. 관련법령 : 섬 발전 촉진법

6. 조례안예고기간 : 2025. 11. 6. ~ 2025. 11. 11.

7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지원2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
(전화: 061-550-5937, FAX: 061-550-5907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 등

8. 기타

○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2팀(전화: 061-550-5937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2. 완도군 섬 발전 기본 조례안 1부. 끝.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안 예고명	완도군 섬 발전 기본 조례안			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	
	주 소			
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				

「완도군 섬 발전 기본 조례」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

완도군의회의장 귀하

완도군 섬 발전 기본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완도군 섬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섬”이란 「섬 발전 촉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.
2. “섬의 날”이란 법 제2조의2에 따른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원칙) 섬 개발과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되어야 한다.

1. 획일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개별 섬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한다.
2. 섬 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한다.
3. 섬의 정체성 표현을 위한 경관디자인을 계획하고 사업 추진 시 적용한다.
4.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섬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.
5. 섬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섬 별 장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① 이 조례는 완도군 섬 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.

② 섬 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완도군 섬발전종합계획)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완도군 섬발전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섬 지역 현황·특성의 분석
2. 대내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
3. 이미 추진된 사업이나 추진 중인 사업의 효과성 진단
4. 부문별 사업계획
5.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
6. 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협력
7.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 시 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.

④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군수는 섬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군수는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

활용하기 위하여 섬의 인구와 항로, 섬이 보유한 자원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완도군 섬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) ① 섬 발전 정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도군 섬발전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
2. 섬 발전 정책의 방향
3. 섬의 장기 비전과 목표를 포함한 부문별 사업계획의 작성
4.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1. 완도군의회 의원 2명
2. 섬 발전 관련 기관·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3. 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

4. 그 밖에 섬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9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간사)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.

제13조(섬 관련 행사 추진 등) ① 군수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완도군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.

1. 섬의 날 기념행사

2.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

3. 섬 관련 학술행사

4.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여객선 운임지원) ① 군수는 국가행사의 경우 섬의 날에 완도군 관내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

② 제1항에 따른 여객선 운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15조(포상) 군수는 섬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, 단체, 법인,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「완도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섬 발전 촉진법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**“섬”이란 만조(滿潮)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**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

1. 제주특별자치도 본도(本島)
2. **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섬**

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섬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섬으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섬은 예외로 한다.

제2조의2(섬의 날) ①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**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**로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.

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

제2조(육지와 연결된 기간) 「섬 발전 촉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2호에서 **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10년을** 말한다.